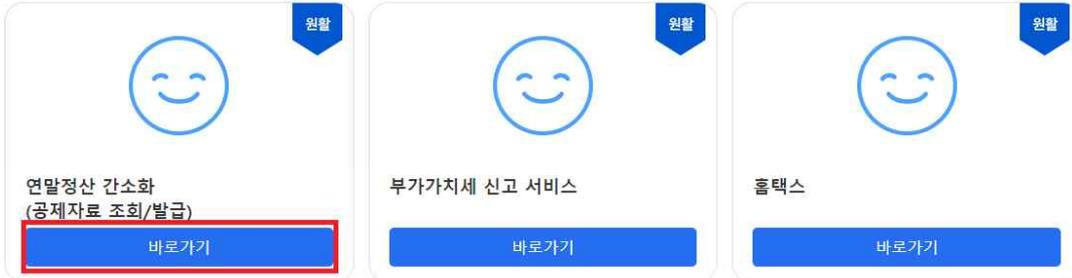


## PC를 이용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다운받기

1.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(hometax.go.kr)접속, 공동인증 혹은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



### 연말정산 사용자 집중에 따른 안내사항

- 연말정산 서비스는 1.15.(수) ~ 1.20.(월)에 이용자가 많으므로 1.21.(화) 이후 접속하면 기다리지 않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.
- 연말정산 이용자가 집중되는 1.20.(월), 09시부터 18시까지의 자료 대량조회(스크래핑) 서비스가 일부 제한될 수 있으니 홈택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## 2. 연말정산 간소화 시작하기 클릭



### 연말정산간소화

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조회하기 전에 **몇가지 정보**를 알려드릴게요.

**연말정산간소화 시작하기**  
(소득·세액공제 자료 조회)

나에게 자료제공을 동의한 부양가족

0명

회사가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하면 근로자의 제공 동의만으로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므로 근로자가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.

일괄제공 조회/취소 이동

일괄제공 서비스 안내

#### 부양가족 공제의 나이와 소득 요건을 꼭 확인하세요.

- 부부가 자녀를 중복하여 공제받거나,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.
- 부양가족의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)을 초과 하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.
- 20세 이상 자녀라도 요건에 따라 교육비 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.
- 의료비,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나이와 소득 제한없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.

####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올해 많이 변경되는 사항은 FAQ를 참고해 보세요.

연말정산간소화 FAQ

### 3. 조회하기 하나씩 클릭 후 비밀번호 설정안함 후 내려받기 해주세요 2024년 입사자는 입사한 월부터 체크해주세면 됩니다

소득·세액공제 자료 조회

**2024년 입사자의 경우 입사한 월부터 체크**

귀속년도: 2024년 | 1월 | 2월 | 3월 | 4월 | 5월 | 6월 | 7월 | 8월 | 9월 | 10월 | 11월 | 12월 | 전체 월 해제

나에게 자료제공을 동의한 부양가족: 상세보기

내려받을, 인쇄할 문서에 개인정보를:  공개안함  공개함

내려받을 문서에 비밀번호를:  설정안함  설정함

**조회하기 하나씩 클릭** | **비밀번호는 설정 안함으로 꼭 해주세요**

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<a href="#">조회하기 Q</a>	건강/교용보험 <a href="#">조회하기 Q</a>	국민연금 <a href="#">조회하기 Q</a>	보험료 <a href="#">조회하기 Q</a>
의료비 <a href="#">조회하기 Q</a>	교육비 <a href="#">조회하기 Q</a>	신용카드 <a href="#">조회하기 Q</a>	직물카드 등 <a href="#">조회하기 Q</a>
현금영수증 <a href="#">조회하기 Q</a>	개인연금저축/연금계좌 <a href="#">조회하기 Q</a>	주택자금/월세액 <a href="#">조회하기 Q</a>	주택마련저축 <a href="#">조회하기 Q</a>
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/ 벤처기업투자신탁 <a href="#">조회하기 Q</a>	소기업·소상공인 공제부금 <a href="#">조회하기 Q</a>	기부금 <a href="#">조회하기 Q</a>	장애인증명서 <a href="#">조회하기 Q</a>

**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전에 꼭 확인** 해주세요!

- 최종자료는 1월 20일부터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추가·수정 제출한 자료를 제공해요.
- 자료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셔야 해요.
- 조회된 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에 문의하셔야 해요.
-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므로 공제·요건 충족 여부를 근로자가 직접 확인해 주세요.
- 부양가족의 자료 조회를 위해서는 자료제공동의 절차가 필요해요.
- '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)을 초과한 부양가족의 명단을 올해부터 처음 제공해요
- 위의 소득기준을 초과한 부양 가족의 자료는 의료비·교육비·보험료 외에 제공하지 않아요.
- '23.12.31. 이전에 사망한 부양 가족의 자료는 부양가족이 포함되어 있는 항목에는 제공하지 않아요.